

법원 공보

2025. 03. 01.
제 1707 호



법원행정처

목차

• 규칙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Ⅰ	309
• 내규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Ⅰ	310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일부개정내규	Ⅰ	311
	법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Ⅰ	313
• 예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Ⅰ	315
	법조경력 10년 미만 판사에 대한 단독재판 허가에 관한 지침	Ⅰ	359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Ⅰ	361
• 신법령 목록		Ⅰ	363

■ 규칙

◎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3197호 2025. . . 공포)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 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 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 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내규

◎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법원행정처내규 제136호 2025. 2. 11.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부서)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설치한다.

제3조(운영)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유관부서 담당자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을 통솔한다.

제4조(사무) 규칙 제3조제2호의 국내 개최 국제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2.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79호 2025. 2. 10.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소·고발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제5조제2항 중 “제1호”를 “제1호(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생략)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
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생략)

〈신 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절차별로,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생략)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또는 고소·고발을 하려는 경우(이하 ‘부당소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고소·고발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② -----
----- 제1호(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 한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법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대법원내규 제580호 2025. 2. 19. 결재)

법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우수 공무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포상금
- 6. 법원회보(법원사람들) 등 문예·창작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부 칙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조(포상금의 종류 및 등급)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개 정 안

제5조(포상금의 종류 및 등급)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우수 공무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포상금

6. 법원회보(법원사람들) 등 문예·창작 수상자에 대한 포상금

예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23호 2025. 2. 13. 결재)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2년 미만	10퍼센트	8년 미만	35퍼센트
5년 미만	20퍼센트	9년 미만	40퍼센트
6년 미만	25퍼센트	10년 미만	45퍼센트
7년 미만	30퍼센트	10년 이상	50퍼센트

제3조제5항제3호나목 하단 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시 〉

- 2025. 5. 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25.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25. 7월 지급액: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25. 5. 1. ~ 6. 30.) ÷ 6월
 - ※ 군복무기간을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에 산입하여 수당 지급
- 2025. 6. 7. 신규채용자의 2025.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제4조제2항제3호 하단 표 <부양가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법관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19세 미만 적용

제4조제3항제3호가목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0,000원”을 “80,000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10,000원”을 “12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목 하단 표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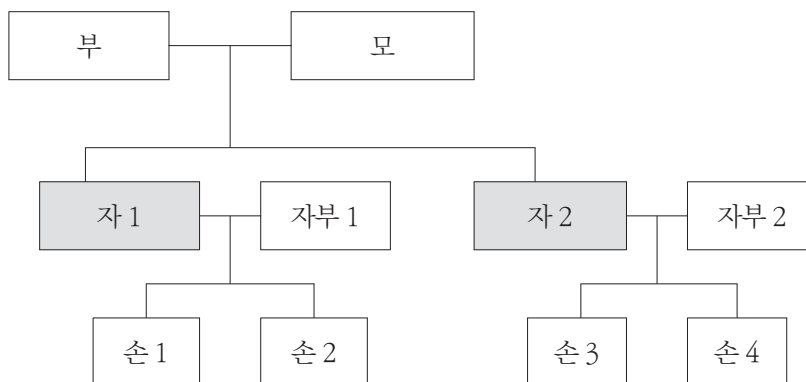
제4조제3항제3호사목 중 “만 19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 하단 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시 〉

- 법관이 4명(배우자,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6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24년 6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규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20,000원 추가 지급
- 위 예시에서 법관의 아버지가 2025년 7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 법관의 가족이 부(60세 이상), 모(55세 이상), 배우자, 자녀1(22세), 자녀2(21세), 자녀3(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20,000원 등 총 200,000원 지급
 - * 자녀3이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규칙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9세 미만 뿐 아니라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제4조제5항제2호나목 하단 표 <형제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형제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법관 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손2)를 제외하고 3명으로 4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만6세”를 각각 “6세”로, “총12년”을 “총 1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3세”를 “3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만8세”를 “8세”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가목,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
- 2)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 원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다목 * 중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를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로, “고용지원센터”를 “고용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
-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한다.
-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 예 시 〉

- 2023. 10. 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법관인 엄마가 2024.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법관인 아빠가 2024. 2. 1.부터 9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방법
 - 엄마: 육아휴직 1년 간 월봉급액의 80%(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아빠: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월봉급액의 100%(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9개월 간 월봉급액의 80%(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 2024. 10. 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법관인 엄마가 2025.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법관인 아빠가 2025. 2. 1.부터 9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방법
 - 엄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100%(2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100%(20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개월~12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16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 아빠: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월봉급액의 100%(2개월째까지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9개월 간 월봉급액의 80%(16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2025.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100%(30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100%(20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개월 ~ 12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16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대신하여”를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 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	$\frac{10}{\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 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수당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 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 으로 한다)	×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주당 근무시간} - 10}{\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나. 2007. 12. 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2008. 1. 1 이후부터는 임신 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 단, 제도 도입(2015. 11. 10.)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

*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녀를 말하며, 그 증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3.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지정된 법관에 대한 2025.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의 개정(2025. 1. 23.)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을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 예 시 〉

○ 같은 자녀에 대해 2023. 4. 1.부터 2023. 8. 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3. 9. 1.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4. 2. 1.부터 2024. 12. 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23. 4. 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23. 4. 1.부터 8. 31.까지의 5개월과 2024. 2. 1.부터 8. 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2023. 4. 1.부터 2023. 8. 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4. 2. 1.부터 2024. 12. 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23. 4. 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23. 4. 1.부터 8. 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법관이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 2015. 11. 10.부터 12. 31.까지의 1개월 21일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법관이 2024. 8. 1.부터 2025. 1. 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한 후 2025. 2. 1.부터 2025. 12. 31.까지 11개월간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일 부터 최초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하므로 2024. 8. 1. ~ 2025. 12. 31.까지의 17개월에 대하여 지급
- 법관이 2024. 1. 1. ~ 2025. 9. 30.까지 21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24. 1. 1. ~ 2024. 3.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한 경우 법관의 수당 지급기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므로 2024. 1. 1. ~ 2025. 6. 30.까지의 18개월에 대하여 지급
- 법관이 2023. 7. 1. ~ 2025. 6. 30.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24. 10. 1. ~ 2024. 12.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법관의 수당 지급기간
 - 2023. 7. 1. ~ 2024. 6. 30.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제도 도입(2025. 1. 1.) 전 육아휴직을 18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202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아님

제6조제4항제1호에 * 및 <예시>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법관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

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 예 시 〉

- 법관이 2024. 4. 1.부터 2025. 9. 30.까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25. 10. 1.부터 2025. 12.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한 경우 법관의 수당 지급 시기
 -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 2025. 4. 1.부터 2025. 9. 30.까지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시점(2025. 12. 31.)의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제6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9호 하단 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일부 사용한 법관에 대한 지급 방법: 2025.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5.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5.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예 시 〉

- 법관이 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2019. 2. 1.부터 4. 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2. 1. ~ 3. 31.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최대 250만원) 지급
- 법관이 2015. 7. 1.부터 9. 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 1. ~ 7. 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2020. 2. 1.부터 4. 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 120만원) 지급(2015. 7. 1. ~ 9. 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 법관이 2015. 11. 1. ~ 2016. 4. 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 1. ~ 11. 30.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 / 12. 1. ~ 12. 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지급)한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2016. 1. 1.부터 1. 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 1. ~ 4. 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지급(2015. 12. 1. ~ 12. 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 2019. 3. 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20. 2. 28.까지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이후 법관인 남편이 2021. 7. 1.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임
- 2018. 3. 1.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 3. 1.부터 2018. 5.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법관인 남편이 2018. 7. 1.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임
- 2018. 8. 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법관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법관이 2018. 11. 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2018. 1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2019. 1. 1.부터 2019. 1. 31.까지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 이후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9개월간은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
- 2021. 4. 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2021. 6. 1.부터 2022. 3. 1.까지 육아휴직한 경우
 - 2021. 6.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1. 6. 1.부터 2021. 8. 31.까지는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 2022. 1. 1.부터 2022. 3. 1.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지급

※ 이때, 월봉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2021. 6. 1.) 당시 월봉급액임을 유의할 것
- 2021. 4. 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법관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법관이 2021. 6. 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2021. 6. 1.부터 2022. 3. 1.까지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1. 6.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1. 6. 1.부터 8. 31.까지는 월봉급액의 100%(최대 250만원), 2021. 9.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 2022. 1. 1.부터 2022. 3. 1.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지급

※ 이때, 월봉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2021. 6. 1.) 당시 월봉급액임을 유의할 것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 9. 1.부터 2024. 2. 29.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3. 12.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 2024. 1. 1.부터 2024. 2. 29.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 11. 1.부터 2024. 4. 30.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 10. 1.부터 2025. 3. 31.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 10.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 4. 1.부터 2024.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 2024. 10.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후 기간에 대해 수당 미지급
 - 2025. 1. 1.부터 2025. 3. 30.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8개월째까지 16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제6조제5항제3호 본문 중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을 제외한 미지급분”을 “미지급분”으로, 같은 호 * 중 “육아휴직 복직 후”를 “2025. 1. 1.이전의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로 하고, 같은 호 하단 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시 〉

- 2023. 2. 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3. 2. 22.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2023. 5. 24.부터 2024. 1.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 2023. 2. 1. ~ 2. 21.(21일)에 대해서도 2023. 5. 24.부터 사용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휴직에 해당하므로 수당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2021. 1. 20. ~ 2021. 12. 31.(총 11개월 12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2023. 3. 14. ~ 2023. 3. 31.(18일)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고, 연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3. 4. 1.부터 2023. 12. 31.까지 한 경우
 - 2023. 3. 14. ~ 3. 31.(18일)은 2021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고, 합산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대상기간이 종료일(2021.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수당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20일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자녀에 대해 2020. 1. 1.부터 2021. 1. 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기간에 대해 합산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만 지급되므로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2020. 12. 10. 까지임. 따라서 20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휴직한 부분은 지급 불가
- 법관이 2023. 12. 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3. 12. 22.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한 후 2024. 3. 23.부터 2024. 5.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지급액
 - ①합산기간(2023. 12. 1. ~ 2023. 12. 21.) + ②합산기간(2024. 3. 23. ~ 2024. 5. 31.)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호봉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되,
 - ①기간에 대하여는 '24. 3. 31.에 합산하여 30일에 도달하므로, '24년 4월 급여지급일에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외)을 일시급으로 지급
 - * '24년 4월 급여지급일에 해당 법관이 받는 수당 :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외) + ②기간 해당월 육아휴직 수당
 - ①기간에 적립된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②기간 육아휴직 종료(2024. 5. 31.)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 째 보수지급일에 일시급으로 지급
 - * '24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해당 법관이 받는 수당 : ①기간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 ②기간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6조제6항 하단 표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시 〉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의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 2024. 1. 4.부터 2024. 12.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24. 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2024. 1. 1. ~ 2024. 1. 3.: 정상적인 보수지급
 - 2024. 1. 4. ~ 2024. 1. 31.: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28(휴직일) / 31]

-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 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 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 둘째 자녀에 대하여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법관(3호봉)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2024. 1. 1. 이후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중 15%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2024년도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4,197,900원)의 80퍼센트 해당 금액(3,358,320원)이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월 150만원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법관(3호봉)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2025. 1. 1. 이후 모든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15%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1~3개월째는 상한액이 250만원, 4~6개월째는 상한액이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2025년도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4,323,800원)이 1~6개월째의 각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1~3개월째는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4~6개월째는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며,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수당 또한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의 80퍼센트 해당금액(3,459,040원)이 상한액인 160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월 160만원 지급

제14조제2항제5호나목 하단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렬	
일반회계	일반직공무원	사법행정직군의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보안관리직렬(보안관리직류)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의 공무원(8,9급)	50,000원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5-9급)	50,000원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렬	
일반회계	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50,000원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 (5-9급)		50,000원

제14조제2항제5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산금

- 1) 지급대상: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2) 지급범위: 소속기관의 장(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5호에 규정된 금액

제14조제2항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산금

- 1) 지급대상: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의 재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형사재판부에서 참여업무 또는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9급 공무원
 - * 가산금 지급대상 직책 또는 직무를 겸임 또는 겸직하더라도 가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2)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에 규정된 금액

제14조제2항제11호나목1) 하단 표 <예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예 시 >

- 공탁업무담당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2024. 12. 31.)하다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2025. 1. 1.) 후 다시 공탁업무담당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전보(2025. 7. 1.)되는 경우의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5. 7. 1.자로 새롭게 기산함

〈 예 시 〉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2024. 12. 31.)하다 전문직위군 내 시설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전보(2025. 1. 1.) 시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 2024. 12. 31.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 2024. 12. 31.)하다 전문직위 전문관인 예산담당관으로 승진(2025. 1. 1.) 시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 2024. 12. 31.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부 칙

이 예규는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3조(정근수당) ① · ② (생 략)

③ 정근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에 대한 지급률을 달리하여 계산한다.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30퍼센트
2년 미만	5퍼센트	8년 미만	35퍼센트
3년 미만	10퍼센트	9년 미만	40퍼센트
4년 미만	15퍼센트	10년 미만	45퍼센트
5년 미만	20퍼센트	10년 이상	50퍼센트
6년 미만	25퍼센트		

* (생 략)

④ (생 략)

⑤ 정근수당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생 략)

나. 신규채용

〈 예 시 〉

- 2021.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21.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21.7월 지급액: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21.5.1. ~ 6.30.) ÷ 6월
- ※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군복무기간은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
- 2021.6.7. 신규채용자의 2021.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개 정 안

제3조(정근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2년 미만	10퍼센트	8년 미만	35퍼센트
5년 미만	20퍼센트	9년 미만	40퍼센트
6년 미만	25퍼센트	10년 미만	45퍼센트
7년 미만	30퍼센트	10년 이상	50퍼센트

*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예 시 〉

- 2025. 5. 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25.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25. 7월 지급액: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25. 5. 1. ~ 6. 30.) ÷ 6월
- ※ 군복무기간을 정근수당 산정을 위한 근무연수에 산입하여 수당 지급
- 2025. 6. 7. 신규채용자의 2025.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현행

다. (생략)

제4조(가족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 (생략)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법관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예시〉

(생략)

개정안

다. (현행과 같음)

제4조(가족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법관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19세 미만 적용

〈예시〉

(현행과 같음)

현행

③ 가족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법관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마. · 바. (생략)

사. 규칙 부칙에 따라 2018. 1. 1. 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미만으로 한다.

개정안

③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50,000원

나. -----80,000원

다. -----120,000원

라. -----
------(19세 ---)-----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해 실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 ‘장애가 있는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19세 이상이 된 경우: 지급함

마. · 바. (현행과 같음)

사. -----

-----19세 미만-----.

현행

〈예시〉

- 법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6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23년 6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규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10,000원 추가 지급
- 위 예시에서 법원의 아버지가 2023년 7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 법원의 가족이 부(만 60세 이상), 모(만 55세 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10,000원 등 총 190,000원 지급
- *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규칙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19세 미만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④ (생략)

⑤ 가족수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개정안

〈예시〉

- 법원이 4명(배우자,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6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24년 6월 셋째 자녀가 출생하여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2007년 규칙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 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월 120,000원 추가 지급
- 위 예시에서 법원의 아버지가 2025년 7월에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 수가 4명 이하(부, 모, 배우자 3명)이므로,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
- 법원의 가족이 부(60세 이상), 모(55세 이상), 배우자, 자녀1(22세), 자녀2(21세), 자녀3(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20,000원 등 총 200,000원 지급
- * 자녀3이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규칙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19세 미만 뿐 아니라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④ (현행과 같음)

⑤ -----.

1. (현행과 같음)

현행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법관 또는 공무원(국가·지방 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에서 보조되는 사립 학교 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 등 포함) 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생략)

* (생략)

〈 존·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1 〉

(생략)

〈 존·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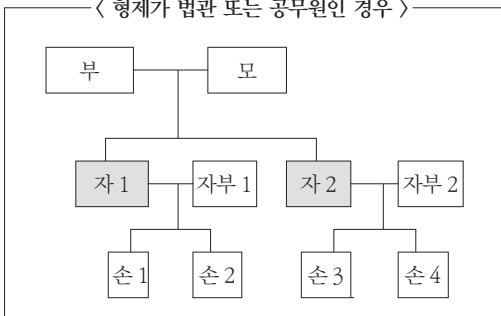
(생략)

나. 형제·자매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연 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법관 또는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생략)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연장자가 연 하자의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 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하는 것으로 갈음함

〈 형제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



개정안

2. -----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존·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1 〉

(현행과 같음)

〈 존·비속이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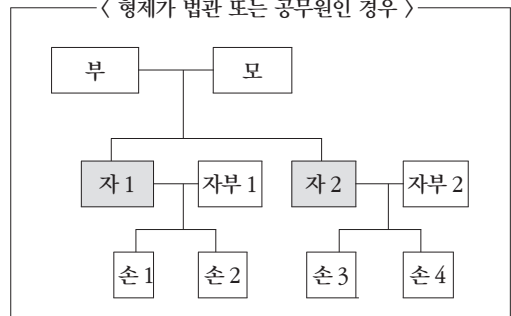
(현행과 같음)

나. -----

* (현행과 같음)

* -----

〈 형제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



현행

○ 조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법관 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만 19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손2)를 제외하고 3명으로 4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 5. (생략)

⑥ · ⑦ (생략)

⑧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이하 “재외법관”이라 한다. 다만 파견규칙에 따른 국제기구 등 파견법관은 국내법관에 준하여 지급한다.)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만 19세미만의 자녀(만 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 (생략)

2. ~ 4. (생략)

⑨ · ⑩ (생략)

제5조(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 조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법관 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손2)를 제외하고 3명으로 4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5조(재외법관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
-----.

현행

재외근무지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재외법관(규칙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
견자 포함)

* (생략)

1. · 2. (생략)

3.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 범위

재외법관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만6세 이상으
로 취학하거나 만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 과
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
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 중 중·고등학교 과정
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한다.

* (생략)

4.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재외법관의 자녀가 만3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 (생략)

② ~ ⑦ (생략)

제6조(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법관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
(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법관에게 육아
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

*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6세-----

-----6세-----

-----총 12년-----

* (현행과 같음)

4. -----

-----3세-----

*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육아휴직수당) ① -----

-----8세-----

현행

②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7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12개월을 말함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개월째는 200만 원,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는 300만 원, 4개월째는 350만 원, 5개월째는 400만 원, 6개월째는 450만 원으로 한다.

개정안

② -----.

1.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법관 호봉 기준 월봉급액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한다.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 원
-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 원
-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 원

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법관인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현행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㉑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한다.

㉒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

㉓ 삭제

〈 예 시 〉

- 2020.10.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엄마가 2022.1.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법관인 아빠가 2022.2.1.부터 6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 지급 방법
- 엄마: 육아휴직 1년 간 월봉급액의 80%(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아빠: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월봉급액의 100%(2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4~6개월 간 월봉급액의 80%(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지급

개정안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300만 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한다.

〈 예 시 〉

- 2023. 10. 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법관인 엄마가 2024.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법관인 아빠가 2024. 2. 1.부터 9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방법
- 엄마: 육아휴직 1년 간 월봉급액의 80%(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 아빠: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월봉급액의 100%(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 ~ 9개월 간 월봉급액의 80%(1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 2024. 10. 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법관인 엄마가 2025.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법관인 아빠가 2025. 2. 1.부터 9개월 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방법

현행

개정안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 1.총지급액의 가., 나. 및 라.에서 정한 지급액(이하 ‘총지급액’이라 한다)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총지급액 가. 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이하 ‘최소 지급액’이라 한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다만,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총지급액을 매월 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 엄마: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100%(2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100%(20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개월 ~ 12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16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첫 6개월 간 월봉급액의 100%(2개월째까지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9개월 간 월봉급액의 80%(16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법관이 2025. 1. 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수당지급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100%(30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봉급액의 100%(20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7개월 ~ 12개월째까지는 월봉급액의 80%(16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 지급

〈삭 제〉

〈삭 제〉

현행

가.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나. 총 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6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법관(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 $\frac{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개정안

4. -----

가. -----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10}{\text{(주당 단축 근무 시간)}} \times \text{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현행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 근무시간} - 5}{\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 (생략)

나. (생략)

③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안

나머지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 \frac{\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 지정일 기준 월 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150만 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 원을 하한액으로 한다)}}{\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text{육아기 근무시간} - 10(\text{주당 단축 근무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으로 한다})}$
--------------------------------	---	--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③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1년)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나. 2007. 12. 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2008. 1. 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미만) 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 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 단, 제도 도입(2015. 11. 10.) 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현행

2. 2007. 12. 31.까지는 자녀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규칙 제10조의2 제1항의 개정으로 2008. 1. 1 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동 수당을 지급한다.

3.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개정안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의 경우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육아휴직일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 지정일부터 최초 18개월 이내로 하며,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모 또는 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

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모 또는 모

*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7항제3호에서 정하는 장애가 있는 자녀”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녀를 말하며, 그 증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 장애에게 제출하여 신청(대상 자녀의 장애의 정도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3.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관으로서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했거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지정된 법관에 대한 2025. 1. 1. 이후의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현행

근무(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1년)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 단, 제도 도입(2015. 11. 10.)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 예 시 〉

- 같은 자녀에 대해 '20.4.1.부터 '20.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9.1. 복직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21.2.1.부터 '21.12.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4.1.~8.31.까지의 5개월과 '21.2.1.~8.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20.4.1.부터 '20.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1.2.1.부터 '21.12.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4.1.~8.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개정안

규칙 제10조의2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6항의 개정(2025. 1. 23.)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을 18개월에서 해당 법관의 2025. 1. 1. 전의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한다.

〈 예 시 〉

- 같은 자녀에 대해 2023. 4. 1.부터 2023. 8. 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3. 9. 1. 복직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4. 2. 1.부터 2024. 12. 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23. 4. 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23. 4. 1.부터 8. 31.까지의 5개월과 2024. 2. 1.부터 8. 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2023. 4. 1.부터 2023. 8. 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2024. 2. 1.부터 2024. 12. 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2023. 4. 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2023. 4. 1.부터 8. 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현행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법관이 '14.9.1.부터'15.12.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 '15.11.10.~12.31.까지의 1개월 21일에 대하여 지급

개정안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 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법관이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 2015. 11. 10.부터 12. 31.까지의 1개월 21일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법관이 2024. 8. 1.부터 2025. 1. 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 한 후 2025. 2. 1.부터 2025. 12. 31.까지 11개월간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법관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일 부터 최초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하므로 2024. 8. 1. ~ 2025. 12. 31.까지의 17개월에 대하여 지급
- 법관이 2024. 1. 1. ~ 2025. 9. 30.까지 21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24. 1. 1. ~ 2024. 3.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한 경우 법관의 수당 지급기간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므로 2024. 1. 1. ~ 2025. 6. 30.까지의 18개월에 대하여 지급
- 법관이 2023. 7. 1. ~ 2025. 6. 30.까지 2년간 육아휴직을 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24. 10. 1. ~ 2024. 12.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법관의 수당 지급기간
- 2023. 7. 1. ~ 2024. 6. 30.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나, 제도 도입(2025. 1. 1.) 전 육아휴직을 18개월 이상 사용하였으므로 2025. 1. 1.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아님

현행

④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신설〉

〈신설〉

2. ~ 9. (생략)

개정안

④ -----.

1. -----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법원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육아)휴직증명서,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법관 또는 공무원이 아닌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 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함)

〈예시〉

○ 법관이 2024. 4. 1.부터 2025. 9. 30.까지 18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2025. 10. 1.부터 2025. 12. 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 한 경우 법관의 수당 지급 시기

-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 2025. 4. 1.부터 2025. 9. 30.까지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시점(2025. 12. 31.)의 다음달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2. ~ 9. (현행과 같음)

현행

〈신설〉

〈예시〉

- 법원이 '15.7.1.~15.7.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19.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2.1.~3.31.까지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최대 250만원) 지급
- 법원이 '15.7.1.~9.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1.~7.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20.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 120만원) 지급('15.7.1.~9.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 법원이 '15.11.1.~16.4.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1.~11.30.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 / 12.1.~12.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지급)한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16.1.1.~1.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1.~4.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지급('15.12.1.~12.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개정안

10.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일부 사용한 법원에 대한 지급 방법: 2025. 1. 1. 전의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규칙 제10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25. 1. 1.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2025. 1. 1.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예시〉

- 법원이 2015. 7. 1.부터 2015. 7. 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2019. 2. 1.부터 4. 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2. 1. ~ 3. 31.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퍼센트(최대 250만원) 지급
- 법원이 2015. 7. 1.부터 9. 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 1. ~ 7. 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2020. 2. 1.부터 4. 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퍼센트(최대 120만원) 지급(2015. 7. 1. ~ 9. 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 법원이 2015. 11. 1. ~ 2016. 4. 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 1. ~ 11. 30.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 지급 / 12. 1. ~ 12. 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지급)한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2016. 1. 1.부터 1. 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퍼센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 1. ~ 4. 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지급(2015. 12. 1. ~ 12. 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현행

- 2019.3.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20.2.28.까지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이후 법관인 남편이 2021.7.1.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임
- 2018.3.1.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3.1.부터 2018.5.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법관인 남편이 2018.7.1.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임
- 2018.8.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법관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법관이 2018.11.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2018.1.1.~2018.12.31.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2019.1.1.~2019.1.31.까지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 이후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9개월간은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
- 2021.4.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2021.6.1.~2022.3.1.까지 육아휴직한 경우
 - 2021.6.1.~2021.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1.6.1.~2021.8.31.까지는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2021.9.1.~2021.12.31.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 2022.1.1.~2022.3.1.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지급
 - ※ 이때, 월봉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2021.6.1.) 당시 월봉급액임을 유의할 것
- 2021.4.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법관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법관이 2021.6.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2021.6.1.~2022.3.1.까지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1.6.1.~2021.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1.6.1.~2021.8.31.까지는 월봉급액의 100%(최대 250만원), 2021.9.1.~2021.12.31.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개정안

- 2019.3.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20.2.28.까지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이후 법관인 남편이 2021.7.1.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임
- 2018.3.1.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3.1.부터 2018.5.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법관인 남편이 2018.7.1.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임
- 2018.8.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법관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법관이 2018.11.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2018.1.1.부터 2018.12.31.까지는 상한액 200만원, 2019.1.1.부터 2019.1.31.까지는 상한액 250만원을 적용
 - 이후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9개월간은 월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원)를 지급
- 2021.4.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2021.6.1.부터 2022.3.1.까지 육아휴직한 경우
 - 2021.6.1.부터 2021.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1.6.1.부터 2021.8.31.까지는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2021.9.1.부터 2021.12.31.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 2022.1.1.부터 2022.3.1.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지급
 - ※ 이때, 월봉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2021.6.1.) 당시 월봉급액임을 유의할 것
- 2021.4.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법관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법관이 2021.6.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2021.6.1.부터 2022.3.1.까지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1.6.1.부터 2021.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021.6.1.부터 8.31.까지는 월봉급액의 100%(최대 250만원), 2021.9.1.부터 2021.12.31.까지는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현행

- 2022.1.1.~2022.3.1.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0%(최대150만원) 지급
 - ※ 이때, 월봉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21.6.1.) 당시 월봉급액임을 유의할 것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9.1.~2024.2.29.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9.1.~2023.11.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3.12.1.~2023.12.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 2024.1.1.~2024.2.29.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11.1.~2024.4.30.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11.1.~2024.1.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2.1.~2024.4.30.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개정안

- 2022. 1. 1.부터 2022. 3. 1.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월봉급액의 80%(최대150만원) 지급
 - ※ 이때, 월봉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2021. 6. 1.) 당시 월봉급액임을 유의할 것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 9. 1.부터 2024. 2. 29.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3. 12.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 2024. 1. 1.부터 2024. 2. 29.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 11. 1.부터 2024. 4. 30.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 11. 1.부터 2024. 1.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 2. 1.부터 2024. 4. 30.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먼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후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법관이 2023. 10. 1.부터 2025. 3. 31.까지 두 번째로 육아휴직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2023. 10. 1.부터 2023.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2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100% 지급
- 2024. 4. 1.부터 2024.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5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 2024. 10.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12개월 이후 기간에 대해 수당 미지급
- 2025. 1. 1.부터 2025. 3. 30.까지는 개정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18개월째까지 160만원 상한으로 월봉급액의 80% 지급

현행

⑤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 합산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지급시기: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의 다음 달 급여지급일에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을 제외한 미지급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 되는 시점이 포함된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예 시 〉

- 2021.2.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1. 2. 22.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 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한 후 2021. 5. 24.부터 2022. 1.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 2021. 2. 1. ~ 2. 21.(21일)에 대해서도 2021. 5. 24부터 사용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휴직에 해당하므로 수당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2019. 1. 20. ~ 2019. 12. 31.(총 11개월 12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2021. 3. 14. ~ 2021. 3. 31.(18일)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고, 연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1. 4. 1. ~ 2021. 12. 31.까지 한 경우
- 2021.3.14. ~ 3.31.(18일)은 2019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고, 합산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대상기간이 종료일(2019.12.31.)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수당 지급
- 첫째자녀에 대해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20일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자녀에 대해 2020.1. 1.부터 2021. 1. 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9. 1. 1.부터 2019. 1. 20. 기간에 대해 합산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개정안

⑤ -----
-----.

1. · 2. (현행과 같음)

3. -----

미지급분-----
-----.

* 2025. 1. 1.이전의 30일 미만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

〈 예 시 〉

- 2023. 2. 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3. 2. 22.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 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한 후 2023. 5. 24.부터 2024. 1.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 2023. 2. 1. ~ 2. 21.(21일)에 대해서도 2023. 5. 24부터 사용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의 휴직에 해당하므로 수당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해 2021. 1. 20. ~ 2021. 12. 31.(총 11개월 12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였고, 이후 2023. 3. 14. ~ 2023. 3. 31.(18일)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고, 연속하여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2023. 4. 1.부터 2023. 12. 31.까지 한 경우
- 2023. 3. 14. ~ 3. 31.(18일)은 2021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 되고, 합산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대상기간이 종료일(2021.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수당 지급
- 첫째자녀에 대해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20일간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동일자녀에 대해 2020.1. 1.부터 2021. 1. 31.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기간에 대해 합산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현행

-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만 지급되므로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2020. 12. 10. 까지임. 따라서 20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휴직한 부분은 지급 불가

○ 법원이 2020.12.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0. 12. 22.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한 후 2021. 3. 23.부터 2021. 5.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지급액

- ①합산기간(2020.12.1.~2020.12.21.) + ②합산기간(2021.3.23.~2021.5.31.)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호봉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되,

- ①기간에 대하여는 '21.3.31.에 합산하여 30일에 도달하므로, '21년 4월 급여지급일에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외)을 일시급으로 지급

* '21년 4월 급여지급일에 해당 법원이 받는 수당 :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외) + ②기간 해당월 육아휴직 수당

- ①기간에 적립된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②기간 육아휴직 종료(2021.5.31.)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 제 보수지급일에 일시급으로 지급

* '21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해당 법원이 받는 수당 : ①기간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 ②기간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안

- 육아휴직수당은 최초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년까지만 지급되므로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2020. 12. 10. 까지임. 따라서 2021. 1. 1. 현재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2019. 1. 1.부터 2019. 1. 20.까지 휴직한 부분은 지급 불가

○ 법원이 2023.12.1.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하던 중, 2023. 12. 22.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 복직 처리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 한 후 2024. 3. 23.부터 2024. 5.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육아휴직 지급액

- ①합산기간(2023. 12. 1. ~ 2023. 12. 21.) + ②합산기간(2024. 3. 23. ~ 2024.5.31.)에 대하여 각각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호봉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되,

- ①기간에 대하여는 '24. 3. 31.에 합산하여 30일에 도달하므로, '24년 4월 급여지급일에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외)을 일시급으로 지급

* '24년 4월 급여지급일에 해당 법원이 받는 수당 :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제외) + ②기간 해당월 육아휴직 수당

- ①기간에 적립된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는 ②기간 육아휴직 종료(2024. 5. 31.)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 제 보수지급일에 일시급으로 지급

* '24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해당 법원이 받는 수당 : ①기간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 ②기간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⑥ -----

-----.

현행

〈 예 시 〉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1년 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의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 '22.1.5.부터 '23.1.4.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22.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22.1.1. ~ '22.1.4.: 정상적인 보수지급
 - '22.1.5. ~ '22.1.31.: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27(휴직일) / 31]
-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 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 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 둘째 자녀에 대하여 '24.1.1. ~ '24.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법관(3호봉)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개정안

〈 예 시 〉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 자녀 1년, 둘째 자녀 1년 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의 제한 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 부부가 법관 또는 공무원인 경우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 2024. 1. 4.부터 2024. 12. 31.까지 첫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24. 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2024. 1. 1. ~ 2024. 1. 3.: 정상적인 보수지급
 - 2024. 1. 4. ~ 2024. 1. 31.: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28(휴직일) / 31]
-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 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 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 둘째 자녀에 대하여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법관(3호봉)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현행

- '24.1.1. 이후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중 15%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24년도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4,197,900원)의 80퍼센트 해당 금액(3,358,320원)이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월 150만원 지급

개정안

- 2024. 1. 1. 이후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휴직 중 15%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2024년도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4,197,900원)의 80퍼센트 해당 금액(3,358,320원)이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월 150만원 지급
- 첫째 자녀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법관(3호봉)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2025. 1. 1. 이후 모든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15%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며, 1 ~ 3개월째는 상한액이 250만원, 4 ~ 6개월째는 상한액이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상한액이 160만원이므로, 2025년도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4,323,800원)이 1 ~ 6개월째의 각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1 ~ 3개월째는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고, 4 ~ 6개월째는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며, 7개월째 이후 육아휴직수당 또한 일반법관 3호봉 기본급의 80퍼센트 해당금액(3,459,040원)이 상한액인 160만원을 초과하므로 매월 160만원 지급

제14조(특수업무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별 업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민원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5호

가. (생략)

나. 지급액

제14조(특수업무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현행과 같음)

나. -----

현행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렬	
일반회계	일반직공무원	사법행정직군의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보안관리직렬(보안관리직류)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의 공무원(8,9급)	<u>40,000원</u>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5-9급)	50,000원
	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u>40,000원</u>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5-9급)		50,000원

개정안

지급대상			월 지급액
회계	직종	직렬	
일반회계	일반직공무원	사법행정직군의 법원사무, 등기사무, 조사사무, 전산, 통계, 법원경위, 사서, 통역, 보안관리직렬(보안관리직류)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방송통신, 보건직렬의 공무원(8,9급)	<u>50,000원</u>
		사법행정직군의 행정사무, 속기, 보안관리직렬(보안직류), 병기직렬의 공무원과 기술직군의 조경, 환경, 관리직렬의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5-9급)	50,000원
	8, 9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일반직 전문경력관 다군, 8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u>50,000원</u>
등기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5-9급)		50,000원

현행

〈신설〉

6. 재판업무수당: 규칙 별표 9의 제6호

가. ~ 나. (생략)

〈신설〉

개정안

다. 가산금

1) 지급대상: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급범위: 소속기관의 장(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말한다)은 민원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의 30% 범위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절차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5호에 규정된 금액

6.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가산금

1) 지급대상: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의 재판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형사재판부에서 참여업무 또는 참여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5~9급 공무원

* 가산금 지급대상 직책 또는 직무를 겸임 또는 겸직하더라도 가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현행

7. ~ 10. (생략)

11. 전문직위수당: 규칙 별표 9의 제11호

가. (생략)

나. 근무기간 및 지급액

* (생략)

1) 근무기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직위에서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전문직위에서 타 직위로 전보 후 다시 이전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예시〉

-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2021.12.31.)하다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2022.1.1.) 후 다시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전보(2022.7.1.)되는 경우의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2.7.1.일자로 새롭게 기산함

*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에서 전문직위로 전보 시 이전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통산함

개정안

2) 지급액: 규칙 별표 9의 제6호 1)에 규정된 금액

7. ~ 10. (현행과 같음)

11. -----

가. (현행과 같음)

나. -----

* (현행과 같음)

1) -----

-----.

* -----

〈예시〉

- 공탁업무담당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2024. 12. 31.)하다 전문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2025. 1. 1.) 후 다시 공탁업무담당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전보(2025. 7. 1.)되는 경우의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5. 7. 1.자로 새롭게 기산함

* -----

현행

〈예시〉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2021.12.31.)하다 전문직위군 내 시설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전보(2022.1.1.) 시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1.12.31.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2021.12.31.)하다 전문직위 전문관인 예산담당관으로 승진(2022.1.1.) 시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1.12.31.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2) (생략)

12. (생략)

개정안

〈예시〉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2024. 12. 31.)하다 전문직위군 내 시설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전보(2025. 1. 1.) 시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4. 12. 31.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 예산담당관실 예산편성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2024. 12. 31.)하다 전문직위 전문관인 예산담당관으로 승진(2025. 1. 1.) 시 근무기간
 - 전문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2024. 12. 31.까지의 기간을 통산함

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 법조경력 10년 미만 판사에 대한 단독재판 허가에 관한 지침

(대법원행정예규 제1424호 2025. 2. 20. 결재)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이하 "법조경력"이라 한다)을 합산하여 10년 미만인 판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허가) 각급 법원의 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판사로 하여금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재판하도록 사무분담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조(허가의 신청) ① 각급 법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사전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되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법관사무분담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허가의 통지)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즉시 각급 법원의 장에게 통지하되 지원장에 대하여는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모사전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효력) 제4조의 허가는 허가된 기간이 경과하거나 당해 판사가 사무분담 변경 등의 사유로 변론을 열어서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 단독으로 재판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부 칙

이 지침은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단독 재판 허가 신청서

수신 법원행정처장 20 . . .

참조 인사총괄심의관

발신 법원장

이 법원 소속 다음 판사들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제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원)

순번	성 명	생년월일	기수	법조경력	분담사무*	신청 기간	신청 사유

(○○ 지원)

순번	성 명	생년월일	기수	법조경력	분담사무*	신청 기간	신청 사유

* 분담사무는 당해법관이 분담한 재판사무 중 허가가 필요한 사무만을 기재함 (대리재판 사무 중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

◎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25호 2025. 2. 21. 결재)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스마트워크 지원센터)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스마트 워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5조(스마트워크 지원센터) 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형 온라인 원격근무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스마트워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5조 (생략)	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
제36조 (생략)	제37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7조 (생략)	제38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제38조 (생략)	제39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제39조 (생략)	제40조 (현행 제39조와 같음)

신법령 목록 (2025. 2. 1. ~ 2025. 2. 15.)

조약

조약제2598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924	2025. 02. 03.	4
조약제259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	"	33
조약제2600호	대한민국 정부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20929	2025. 02. 10.	3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5243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927	2025. 02. 06.	4
대통령령제35244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35
대통령령제35251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	"	"	54
대통령령제3525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1
대통령령제3524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28	2025. 02. 07.	5
대통령령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	"	28
대통령령제3524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6
대통령령제35248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	"	38
대통령령제35249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2
대통령령제35250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5

대통령령제35253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930	2025. 02. 11.	4
대통령령제35254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5
대통령령제35255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5256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8
대통령령제3525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9
대통령령제35258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22
대통령령제35259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	"	23
대통령령제35260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24
대통령령제35261호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20932	2025. 02. 13.	4
대통령령제35262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
대통령령제3526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35264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총리령

총리령제201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7	2025. 02. 06.	76
총리령제201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8	2025. 02. 07.	47
총리령제2013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30	2025. 02. 11.	25
총리령제201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33	2025. 02. 14.	4

부령

해양수산부령제721호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925	2025. 02. 04.	4
행정안전부령제546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6	2025. 02. 05.	3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7호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20927	2025. 02. 06.	77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8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	"	"	103
교육부령제349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28	2025. 02. 07.	53
국토교통부령제1447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54
국토교통부령제144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76
보건복지부령제1088호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93
환경부령제1153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09
환경부령제1154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11
산업통상자원부령제599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31	2025. 02. 12.	3
국토교통부령제1449호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933	2025. 02. 14.	5
국토교통부령제145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10
국토교통부령제145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문화체육관광부령제580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7
문화체육관광부령제58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8
문화체육관광부령제582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9
행정안전부령제547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6



2025.03.01.제 1707 호
Supreme Court of Korea

